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에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6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비용은 실비로 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건강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규정에 의함)

⑤ 계약자와 수혜자의 의무(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제공자(갑)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규정된 표준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방문요양서비스에 앞서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방문요양서비스에 앞서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⑥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혜자(이용자,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⑦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해제는 기관(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을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나.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⑨ **이용절차** :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⑩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